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10월 27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27일

3.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감면 범위 확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기타 조문의 보완·정리

현행 조문의 내용을 주민이나 세무공무원이 보다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정리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IMF 이후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도록 하였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